

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임만균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: 제2526호

다. 발의일자: 2025. 3. 31.

라. 회부일자: 2025. 4. 2.

2. 제 안 사 유

- 2024년 7월 시민공모를 통해 “리버버스”의 명칭이 “한강버스”로 결정되었으나, 현재까지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제328회 임시회 “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” 심사 당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, 친환경 선박 배터리의 안전 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위원회를 통한 요금 결정 및 위원회 구성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- 업무협약 변경 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조례 제목 및 조문 내 ‘리버버스’ 부분을 ‘한강버스’로 변경.

나. 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상태 점검내용에 친환경 선박의 배터리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태 점검 명시(안 제7조제3항).

- 다. 매년 회계감사 결과보고 시기를 4월에서 3월로 변경(안 제9조).
- 라. 위원회 심의사항에 운항 요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16조제4호).
- 마.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에 재정기획관을 추가
(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).
- 바. ‘운영과 관련한세부사항’을 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’으로 오기 정정(안 제22조제1항).
- 사. 협약에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(안 제22조제2항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업 없음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공모로 선정된 “한강버스”로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<주요 개정 내용>

조 항	내 용
제명 변경	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
명칭 변경	리버버스 → 한강버스
제7조	친환경 선박의 배터리 안전점검 명시
제9조	회계감사 시기를 4월에서 3월로 조정
제16조	심의위원회에 운항 요금 및 할인에 관한 권한 부여
제17조	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정기획관 추가 및 정원 확대(7명→10명)
제22조	협약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 신설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7조는 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상태 점검 내용에 친환경 선박의 연료 탱크와 배터리 상태 점검을 포함하는 것으로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.
- 안 제9조는 “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(제328회 임시회 동의)”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4월에서 3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전 재정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소요 일정을 고려하여 회계감사 결과 보고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16조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운항요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운항요금이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17조는 재정기획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재정지원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위원 수가 늘어난 만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22조는 한강버스 협약에 경미한 변경 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협약 변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의 관리·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.

다만, 동의안 제출이 아닌 상임위원회 보고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강버스 운영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,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.